



전 주 지 방 법 원

이행권고결정

사 건 2022가소 대여금
 원 고 한
 주소 별지 기재와 같다.
 피 고
 주소 별지 기재와 같다.

청구취지와 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.

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행할 것을 권고한다.

이 행 조 항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청구취지 제1항의 금액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2022. 3. ...

사법보좌관



- ※ 1. 이행권고결정은 소장의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에 특별한 오류가 없는 이상 원고의 주장만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.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된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.
- 2.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서와 별도로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.(자세한 내용은 '소액사건 소송절차 안내' 참조)

※ 문의사항 연락처 : 전주지방법원 민사 단독(소액) 법원주사보
 직 통 전 화 : 063-259-5520, 5522(이행권고)
 팩 스 : e-mail :

※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.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(번호)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,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

대여금 2022.03. 제출된과 상위 없음



소 장

원 고 한 (-*****)
 전북 ()
 송달주소: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39, H타워 301호 법무사 전종필 사무소(만성동 1366-9) (송달영수인 : 전종필)
 (휴대전화: 010-9629-**** 이메일: jpb420@hanmail.net)

피 고 (-*****)
 익산시
 (휴대전화: 010- -****)

대여금 청구의 소

청 구 취 지

1. 피고는 원고에게 5,000,000원 및 부터 까지 연 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라는 판결을 원합니다.

청 구 원 인

1. 원고는 2022. 1. 경 전북 사무실 사장실에 찾아 온 피고로부터 피고의 아들이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하는데 퇴원비용 2,000,000원이 부족하니 그 금액을 빌려주면 다음 주에 바로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에게 같은 날 같은 금액을 빌려주었습니다.

※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.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(번호)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, 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